

<p>내 재산”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4호중 “공장 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43조를 삭제한다.</p> <p>제45조 제2항을 삭제한다.</p> <p>제50조 중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p> <p>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1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로 한다.</p>	<p>“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p> <p>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부 칙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등의 대부부료 산출 기준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부과를 포함한다)를 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p>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9조(아파트형 공장 및 협동화 공장에 대한 감면)</p> <p>제19조제1항 중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을</p>	
서울수복 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공동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p>1. 청원일자 및 청원인</p> <p>가. 청원일자 : 1999년 9월 6일</p> <p>나. 청원인</p> <p>○주소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유리사서함 601-206-17</p> <p>○성명 : 해병대사령관 중장 이갑진</p> <p>다. 청원접수번호 : 21</p> <p>2. 소개의원 : 이용부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p> <p>3. 청원요지</p> <p>가. 요구사항</p> <p>○ 2000년 6·25전쟁 50주년기념 종합행사 중 9·28 서울수복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서울시와 해병대사령부가 공동 주관하여 범국민적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중앙청 태극기계양 기념조형물을 설치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p> <p>○ 또한 2001년 이후부터는 서울시가 주관하여 연례적으로 행사 개최도록 요청.</p>	